

Writing a Consumer Advisory

A consumer advisory is a publicly posted written notice that informs consumers about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consuming foods of animal origin (e.g., beef, eggs, lamb, milk, pork, shellfish) that are served raw or undercooked. These foods pose a risk because they have not been processed to eliminate pathogens. The consumer advisory consists of two parts: Disclosure and Reminder.

공개

음식점은 생으로 제공되거나 덜 익힌 동물 유래 음식을 서면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이 주문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음식에 대한 서면 식별은 소비자가 음식을 선택하는 지점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메뉴, 테이블 텐트, 플래카드 또는 기타 인쇄된 수단을 통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공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메뉴에서 음식 항목의 설명의 일부분으로 제공, 예를 들어:
 - 반 쉘에서 제공되는 굴 (생 굴)
 - 생 계란 시저 샐러드
 - 햄버거 (주문에 따라 조리 가능)
- 음식 이름 옆에 별표를 추가하고, 주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
 - 생으로 제공되거나 덜 익힌다거나
 - 생 또는 덜 익힌 재료를 포함하거나 포함될 수 있다

알림

음식점은 또한 소비자에게 이러한 음식을 섭취할 때의 건강 위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는 동물 유래 음식의 설명 또는 식별 옆에 별표를 사용하고,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하는 주석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 음식의 안전성에 대한 서면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 "생 또는 덜 익힌 고기,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 또는 계란을 섭취하면 식중독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생 또는 덜 익힌 고기,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 또는 계란을 섭취하면 특정 의학적 상태가 있는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별도의 소비자 알림 문서를 사용하여 알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메뉴에서 문서를 참조하거나,
- 주문하기 전에 소비자가 문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문서를 요청하지 않고도 소비자가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MC 16.60.140(3-603.11)

KOREAN